



휴보강에 관한 운영 규정

규정번호	2-4-16
제정일자	2011. 3. 10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교원의 출장, 개인사유, 법정공휴일 등으로 발생한 수업 결손을 보강함으로서 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 보되도록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휴강 및 결강) ① 강의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·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휴강 사유 및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20.>

② 강의 담당교수가 강의 개시 시간 후 20분 이상 출강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강으로 하며, 해당 학과장은 이를 공고하고, 강의 담당교수는 휴강 사유 및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<개정 2023. 3. 30., 2024.3.20.>

③ 학과별 행사 또는 초청인사 강연 및 학생들의 행사로 인하여 학과의 일부 또는 전체강좌의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장이 7일전에 휴강 사유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5.12.1., 2023. 3. 30., 2024.3.20.>

제3조 (보강) ① 휴강(결강)은 교과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보강 할 수 있도 록 해당 학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강 사유 및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30., 2024.3.20.>

② 휴강(결강) 해당시간에는 다른 교과목 담당교수가 대강 할 수 있으며 대강의 경우에는 시행 전에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., 2023. 3. 30., 2024.3.20.>

③ 제출된 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결과보고서를 보강 후 7일 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2. 23.> <개정 2022. 8. 11., 2023. 3. 30., 2024.3.20.>

제4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